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03

판결경정 결정 있음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6223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20. 7. 16.

판 결 선 고 2020. 9. 1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2. 8. 원고 A에게 한 취득세 100,468,020원 및 농어촌특별세 8,673,7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원고 B에게 한 취득세 23,315,35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12,880원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03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주주들이다. 원고 A은 C의 주식 18,800주(지분비율 23.5%)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D으로부터 D이 소유하고 있던 C 주식 28,6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지분비율이 59.25%가 되었고, 같은 날 원고 A의 아들인 원고 B는 D으로부터 주식 11,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지분비율이 13.75%가 되었다(이하 원고들이 D으로부터 추가로 취득한 C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나. C는 2011. 9. 29. 당시 건설 중이었던 여주시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7. 2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C는 2016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장부가액 5,850,543,821원을 재고자산(완성건물) 과목으로 계상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이후인 2016. 8. 25.에 원고들이 D으로부터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C의 과점주주(지분비율 합계 73%)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 2. 8.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장부상 가액 5,850,543,821원에 원고들의 주식지분비율을 적용한 3,466,447,214원과 804,449,77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22,783,370원(원고 A 100,468,020원 + 원고 B 23,315,350원), 농어촌특별세 10,686,610원(원고 A 8,673,730원 + 원고 B 2,012,88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03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2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D과 2016. 3. 7.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2016. 3. 25. 명의개서를 하였고 그 시점에 C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따라서 C는 원고들이 과점주주가 된 이후인 2016. 7. 20.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어서[1]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근거한 간주취득세 납부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원고들의 주식취득시점이 2016. 8. 25.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2016. 9. 1.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5항 전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과점주주의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1)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사용승인서(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고 사실상 사용도 가능하지 않은 미완성 건축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소유권이전등기와 무관하게 그 이후의 사용승인일(또는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건물의 취득일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두33845 판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03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2, 4,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6. 8. 25.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는 2018년도 정기 세무조사시 C로부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 재무상태표 등을 제출받아 조사하던 중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이 2016. 7. 20. 이루어졌음을 인지하고, 원고들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정기 세무조사 당시 제출된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일시가 2016. 8. 25.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들은 2018. 1. 26. '부동산 취득일 전에 이미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사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를 재차 제출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이 새롭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에서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가 2016. 3. 25.로 정정되어 있다.

다. D과 원고들 사이에서 작성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는 계약일시가 '2016. 3. 7.'로 기재되어 있다. 위 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원고 A은 D으로부터 C의 보통주식 28,000주를 총 1억 10만 원에, 원고 B는 보통주식 11,000주를 총 3,850만 원에 각 양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금지급 방식은 원고 A은 D이 지정하는 친아들 F의 우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03

은행 통장으로 송금지불하고, 위와 같이 통장으로 송금한 양도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1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원고 B는 D이 지정하는 친아들 F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송금지불하되 위와 같이 통장으로 송금한 양도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85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주식 양수도계약에 따라 대금을 송금한 계좌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원고들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당시인 2018. 11.경에는 D과 주식매매대금을 어떻게 정산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다가 2019. 10. 30. 조세심판원 심의회의에서는 2019. 10. 5.자로(작성일시가 2019. 10. 5.인지 2019. 10. 25.인지가 분명치 않다) 작성된 D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대금결제는 주식 양도일 이전의 금전소비대차 금액과 정산하여 상계처리하였고, 일부 남은 잔금은 2016. 3. 25.자로 원고들이 D에게 각 400만 원, 1천만 원을 현금으로 주는 방식으로 주식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식매매대금 정산방식은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의 내용과는 확연하게 다르고, 그 내용도 주식매매대금 중 일부는 기존 소비대차 채권과 상계하고, 일부 남은 잔금은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것으로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D 명의의 확인서가 작성된 시기는 피고의 세무조사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후에 뒤늦게 작성된 것이어서 위 확인서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의 위 주장내용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원고들은 당초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에서는 세무법인 직원의 실수로 주식양도일자가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양도일시가 2016. 3. 25.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들에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03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무렵 갑자기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상에 기재된 주식양도일시가 기존의 '2016. 8. 25.'에서 '2016. 3. 25'로 변경된 점은 석연치 않다.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관련한 대금지급이 계약서 기재와 다르게 이루어진 이유 및 대금거래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당초 성남세무서에 제출하였던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에 기재된 2016. 3. 25.이 이 사건 주식의 진정한 양도일시라고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03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기본법(2016. 11. 30.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구 지방세법(2016. 9. 1.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03

④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 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3. 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 제4항에 따른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9. 1. 대통령령 제27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끝.